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제3조제1항 관련)

계열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7)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5)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 (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 (제3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산림 (41)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보건·의료 (29)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법,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위 명시된 **학과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명시된 **학과가 아니라면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취득 후,**
- 해당 과목 중 3개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관련학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4]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농업	시설원예기술사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경력기간의 산정방법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주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주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times \frac{\text{주근무시간}}{40} = \text{인정 월수}$$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일근무시간 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times \frac{\text{일근무시간}}{8} = \text{인정 일수}$$

다. 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frac{\text{인정일수}}{25} = \text{인정 월수}$$

※ 비고

- 제1호의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제2호의 “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